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수소자동차 등의 신규등록 신청 시 내압용기장착 검사증 제출을 의무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11제5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
검사증(「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7에 따라 내압용기를 장착한 자동
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39조 중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중 제1호 아목을 자목으로 하
고, 같은 란 제1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11제5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
사증(「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7에 따라 내압용기를 장착한 자동차
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 호

최초등록일 : 년 월 일

① 자동차등록번호		② 차 종		③ 용 도	
④ 차 명		⑤ 형식 및 제작연월			
⑥ 차 대 번 호		⑦ 원동기형식			
⑧ 사 용 본 거 지					
소유자	⑨ 성명(명칭)	⑩ 주민(법인)등록 번호			
	⑪ 주 소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유의사항 :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 또는 수소인 자동차의 경우 ⑦번란의 '원동기형식' 은 '구동전동기형식' 을 말합니다.

1000 1000 1000

등록관청명

작 인

⑫ 제원관리번호
(형식승인번호)

⑬ 길이	mm	⑭ 너비	mm
⑮ 높이	mm	⑯ 총중량	kg
⑰ 배기량	cc	⑱ 정격출력	Ps/rpm
⑲ 승차정원	명	⑳ 최대적재량	kg
㉑ 기통수	기통	㉒ 연료의 종류	(연비 : km/L)

유의사항 :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 "정격출력(ps/rpm)"은 "구동전동기 정격출력/회전수(kW/rpm)"를, "기통수/배기량(cc)"은 "구동축전지 정격전압/용량(V/Ah)"을 말하며, "연료소비율(km/ℓ)"은 "연료소비율(km/kWh)"을 말합니다. 사용연료의 종류가 수소인 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 "정격출력(ps/rpm)"은 "구동전동기 정격출력/회전수(kW/rpm)"를, "기통수/배기량(cc)"은 "연료전지 최고출력(kW)"을 말하며, "연료소비율(km/ℓ)"은 "연료소비율(km/kg)"을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의 특수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은 피연인자동차를 연결하기 위해 허용되는 최대수직하중을 말하며 견인능력과는 무관합니다.

㉓ 구분	㉔ 번호판발급일	㉕ 발급대행자확인
------	----------	-----------

②⑥ 구분(설정 또는 말소) ②⑦ 일 자

㉘ 연월일 부터 ㉙ 연월일 까지 ㉚ 검사 시행장소 ㉛ 주행거리 ㉜ 검사 책임자확인 ㉝ 검사구분

[illegible]

주의사항 : ㉘항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

비 고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 제외):

210mm×297mm[백상지 120g/m² 또는 백상지 80g/m²]

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

- 주소·성명 등의 변경등록(법인과 외국인에만 해당함.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개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정정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봄)
 - 전입신고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사용본거지의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등록관청에 주소·성명 등의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 자동차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유효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 튜닝승인
 - 자동차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
- 이전등록
 - 양수인은 이전사유별로 다음의 기간 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범칙금).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양수인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도 양수인을 대신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말소등록
 - 사유(폐차요청 등)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폐차인수 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
 - 자동차를 도로 등에 무단방치하는 경우에는 폐차 등 강제처리대상이 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

자동차등록증

○○시·도

5. 변경등록사항

㉔ 성명	㉕ 주소	㉖ 등록일자	㉗ 확인

6. 튜닝사항

㉘ 내용	㉙ 검사일자	㉚ 검사책임자확인

7. 기타

㉛ 내용	㉜ 일자	㉝ 확인

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

- 주소·성명 등의 변경등록(법인과 외국인에만 해당함.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개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정정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봄)
 - 전입신고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사용본거지의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등록관청에 주소·성명 등의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 자동차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유효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 튜닝승인
 - 자동차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
- 이전등록
 - 양수인은 이전사유별로 다음의 기간 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범칙금).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양수인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도 양수인을 대신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말소등록
 - 사유(폐차요청 등)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폐차인수증 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
 - 자동차를 도로 등에 무단방치하는 경우에는 폐차 등 강제처리대상이 됩니다(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

자동차등록증

○○시·도

5. 변경등록사항

㉔ 성명	㉕ 주소	㉖ 등록일자	㉗ 확인

6. 튜닝사항

㉘ 내용	㉙ 검사일자	㉚ 검사책임자확인

7. 기타

㉛ 내 용	㉜ 일자	㉝ 확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① 등 령 제18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 지 제9호서식의 자동차신규등 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1. ~ 8. (생 략) <신 설>	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① --- ----- ----- ----- ----- ----- --. 1. ~ 8. (현행과 같음) 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11제5항에 따른 내압 용기장치검사증(「자동차관리 법」 제35조의7에 따라 내압용 기를 장착한 자동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생 략) ② · ③ (생 략) 제39조(말소등록된 등록번호판 등 의 반납 면제) 법 제13조제5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란 천재지변 · 교통사고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하여 <u>자동차등록증,</u> <u>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u> 이 멸 실된 경우를 말한다.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말소등록된 등록번호판 등 의 반납 면제) ----- ----- ----- ----- ----- <u>자동차등록증 및</u> <u>자동차등록번호판</u> ----- -----.